



일터에서의 유해 · 위험 예방 조치 휴게시설

조심조심
코리아

작업전 안전 점검
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

2015 - 교육미디어 - 653

기본적으로 체크하여야 할 조항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79조	휴게시설
제79조의 2	세척시설 등
제80조	의자의 비치
제81조	수면장소 등의 설치
제82조	구급용구

※ 상기 조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관련 법령 및 조항이 있음을 유념한다.



☑ 일터에서 적용하여야 할 유해 · 위험 예방 조치

☑ 휴게시설

-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
- 휴게시설은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
 - 예외) 갯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



☑ 세척시설 등

-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 · 목욕시설,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, 필요한 용품과 용구 구비
 - 환경미화 업무
 - 음식물 쓰레기 · 분뇨 등 오물의 수거 · 처리 업무
 - 폐기물 · 재활용품의 선별 · 처리 업무
 - 그 밖에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

☑ Check Box |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세척시설 등 요약

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하고 있는 내용

구분	조항	주요 작업	세척시설 등 조치
관리대상 유해물질 [별표 12]	제448조 (세척시설 등)	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	• 세면 · 목욕 · 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 설치, 필요 용품과 용구를 구비 • 오염된 작업복과 평상복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구조

구분	조항	주요 작업	세척시설 등 조치
관리대상 유해물질 [별표 12]	제451조(보호복 등 의 비치 등)	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피부나 눈에 직접 닿을 우려가 있는 경우	즉시 물로 씻어낼 수 있도록 세면·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
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 [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물질]	제465조(긴급 세척 시설 등)	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·사용하는 작업장	긴급 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 ※ 배관 찌꺼기와 녹물 등이 나오지 않고 맑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지
금지유해물질 [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물질]	제508조 (세안설비 등)	응급 시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실험실 등	긴급 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 ※ '실험실 등' 이란 금지유해물질을 시험 또는 연구용으로 제조· 사용하는 장소
온도·습도	제570조 (세척시설 등)	작업 중 작업복이 심하게 젖게 되는 작업장	탈의시설, 목욕시설, 세탁시설 및 작업복을 말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
방사선	제589조 (세척시설 등)	방사성물질 취급작업	세면·목욕·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, 필요 용품과 용구 구비
병원체	제599조 (세척시설 등)	혈액매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작업	세면·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
분진	제615조 (세척시설 등)	분진작업	목욕시설 등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

② 세안설비 등의 설치상의 유의사항

▶ 긴급샤워기

- 위험물질 취급지역으로부터 1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.
- 총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시 접근하는데 방해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.
- 동파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동파 방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며 세척용수의 온도가 섭씨 40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한다.
- 잘 보이는 곳에 긴급샤워기의 설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.

▶ 세안설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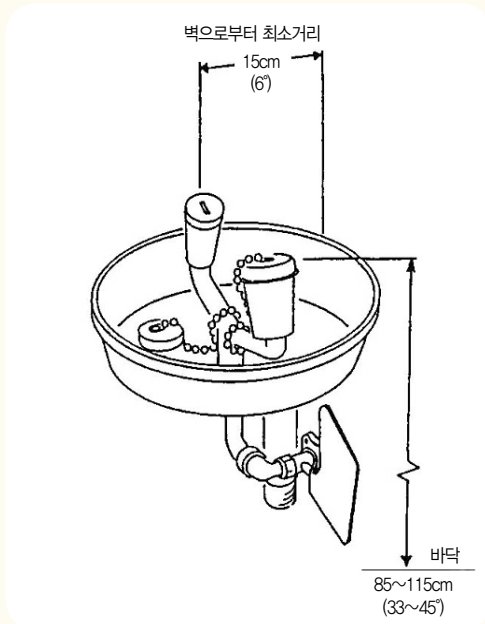
- 강산이나 강염기를 취급하는 곳에는 바로 옆에, 그 외의 경우에는 1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비상시 접근하는 데 방해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.
- 동파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동파 방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며 세척용수의 온도가 섭씨 40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한다.
- 잘 보이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.
- 세척용수의 온도는 따뜻한 정도가 좋다. 다만, 피폭되는 화학물질이 세척용수의 온도에 따라 반응을 촉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.

* 세안설비 등 이라 함은 긴급샤워기 및 세안설비 등을 말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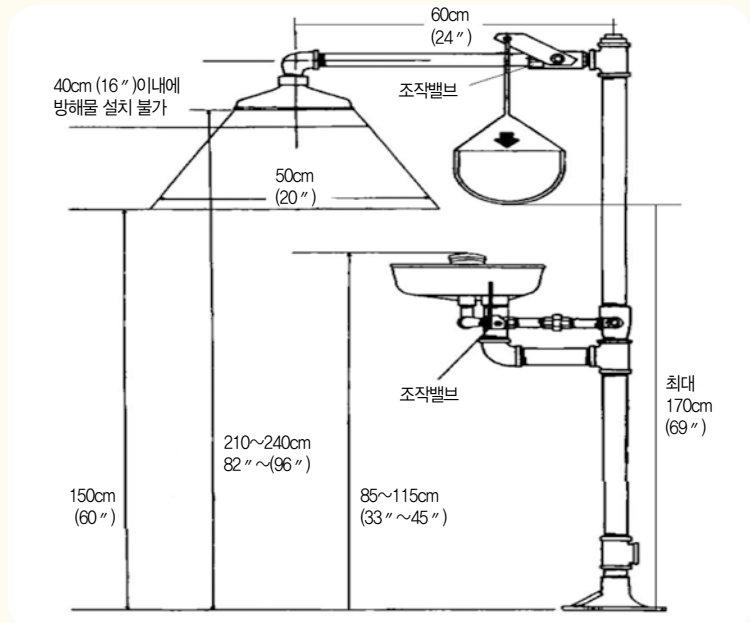
* 긴급샤워기(Emergency shower)라 함은 긴급시 몸 전체를 세척하는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·설치된 샤워꼭지와 샤워꼭지에 세척용수를 공급하는 조작밸브로 구성된 설비

* 세안설비(Eye shower)라 함은 눈을 세척하는 데 사용되는 기구





세안설비의 예



샤워기와 세안설비 결합 설치 예

※ 더 많은 정보는 KOSHA GUIDE D-44-2012 세안설비 등의 성능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조한다.

의자의 비치

-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구비

서서 일하는 직업으로 인한 건강장해

① 근골격계질환

요통, 다리 및 발의 통증



② 순환기계질환

부종, 하지정맥류, 심근경색 및 뇌졸중 등 발병 위험도 증가



③ 임신부에 미치는 영향

조산, 저체중아 출산, 자연유산 등



수면장소 등의 설치

- 야간 작업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 각각 구분하여 설치

수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

- 야간 작업 동안 사이잠을 자면 졸음을 방지하고, 사이잠을 잔 이후 작업에 집중할 수 있으므로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서는 짧은 사이잠을 자게 하는 것이 좋음
- 피로감이 가장 높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갖는 휴식은 매우 효과적임
- 사이잠 시간은 20~30분 정도가 적당하며, 15분 이하의 사이잠은 더 졸리게 할 수 있음
- 사이잠을 위한 수면실은 소음 또는 진동이 심한 장소를 피하고, 남녀용으로 구분하여 설치

Check Box | 야간작업 (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2의2)

- ① 6개월 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
 - ② 6개월 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
- 수면장소에 침구와 필요한 용품을 갖추어 두고 정기적으로 청소·세탁 및 소독한다.



의자가 비치된 휴식공간



수면을 취할 수 있는 공간

구급 용구 비치

-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건강관리실 및 작업현장에 비치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모든 근로자에게 주지
 - 붕대재료·탈지면·핀셋 및 반창고
 - 외상용 소독약
 - 지혈대·부목 및 들것
 - 화상약(고열물체를 취급,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만 해당)
-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



더 많은 안전보건 정보는?

- KOSHA GUIDE D-44-2012 세안설비 등의 성능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
- KOSHA GUIDE D H-57-2015 현장 응급처치의 원칙 및 관리지침

「일터에서의 유해·위험 예방 조치」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조항에서 해당 유해·위험 예방 조치 내용을 사진, 삽화 등을 통해 현장에서 좀 더 적용하기 쉽도록 구성한 것으로,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, 위험성평가, 교육 등에 활용하길 바랍니다.